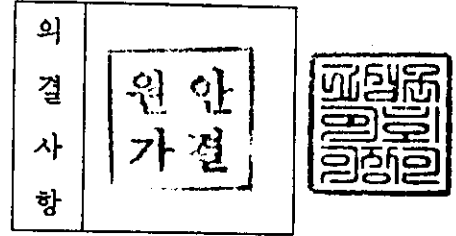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361 호
의결년월일	1996. 7. 5. (제 45 회)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년월일	1996. 6. 26

고성군건축조례증개정조례 (안)

제출일자 : 1996. . . .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의안 번호	
----------	--

1. 개정이유

-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 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소규모 건축공사에 있어서 현장관리인(공사를 수행하는자)의 범위를 정함 (조례 제2조의2)
- 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위원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조례 제3조의2)
- 건축법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등을 정함 (조례 제 4조)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그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등을 정함 (조례 제9조, 제9조의2)
- 대지안의 조경 의무기준의 완화 및 조경기준을 정함 (조례 제11조, 제12조)
- 녹지지역안의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조정 (조례 제52조, 제57조)
- 도시계획사업시행 (20미터의도로에 한함) 구간의 도로에 면한 대지간 합벽개발이 가능하도록 정함 (조례 제 59조)
- 공동주택의 개구부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높이제한을 완화함 (조례 제62조2항)
- 건축물의 설계, 시공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토록한 건축 분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조례 제67조 내지 제74조)

고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제1항 "법·영·시행규칙 및 이조례" 다음에 "(이하"법령등"이라한다)"를 삽입한다
 제3조제2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를 "영 제5조제3항제9호"로 하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
5.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창고·축사등은 제외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

제3조제3항중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축위원회 운영등)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은 사전배포함을 원칙으로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심 의 사 항
원 안 승 인 (가 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 사항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조 건 부 승 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재 심 의 (부 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유 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④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아래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1. 창호의 단순한 규격 또는 마감재료의 크기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건축물의 내부 칸막이 변경
3. 동일한 외관 디자인 형태로서 단순한 수직 수평증감(전체입면 면적의 1/10이내)
4. 허가사항이 아닌 용도변경
5.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평이동
6. 대지면적 및 연면적 2/10이내의 변경
7. 기타 상기 각호와 유사한 내용의 변경

⑤ 사전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 법 제39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2 제목 "적용의 특례"를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 제5조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를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로 하고 제1항1호"나목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중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건축선을 후퇴함써"를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로 하고, 시행규칙 제3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한 견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을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제목중 "대행시 수수료"를 "대행동"으로 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제4항 및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군수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5층이하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전 현장조사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서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 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대행시 건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수수료의 천원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①제9조의 규정에 규정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연녹지안의 대지를 제외한다)"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제1호 "건축물" 다음에 "(단, 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육상조경을 하고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6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경을 위한 식수등을 띠모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교목의 경우 100센치미터 이상, 관목의 경우 5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8호중 "(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제13호중 "처리시설(" 다음에 "주유소 및"을 삽입한다.

제29조중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3호중 "공판장" 다음에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을 삽입한다.

제52조제1항제8호 내지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이하)
-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이하)
-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이하)
-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이하)

제53조제1항1호중 및 제55조1항1호중 "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다만, 아파트의 경우 300퍼센트)
-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 300 퍼센트 (단,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제57조제1항제11호 및 제13호의 "미터"다음에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삽입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 : 60 제곱미터

제58조제1항제1호중 "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을 "2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건축물"로하며, "시설용지지구"를 "농어촌산업지구"로하고, 동조제2호중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시설용지지구"를 "농어촌산업지구"로 한다.

제59조제1항1호중 "시설용지지구"를 "농어촌산업지구"로 하고, 제2항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도시계획사업시행(20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구간의 도로에 면한 대지상호간 합벽 개발의 경우

제62조제2항1호중 "건축물" 다음에 "(다세대를 제외한다)"를 "2배"다음에 "(연립주택의 경우 3배)"를 각각 삽입한다.

제65조제3항중 "은둔시공확인서" 다음에 "또는 에너지융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시공확인서"를 삽입한다.

"제10장"을 "제11장"으로 하고, 제10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66조"를 "제74조"조로 하고, 제66조내지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

제67조 (조정위원회 위원) ①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68조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9조 (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1조 (비용분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운영세칙) 조정위원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규정은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생략)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2조 (생략)	제 2 조 (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 2(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한 사항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
① 법.령.시행규칙 및 이조례	① ... 법.령.시행규칙 및 이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제9호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
(신설)	5.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공장·창고·축사등은 제외한다)의 건축허가에 관한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⑥ (생략)	④~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⑧~⑩ (생략)	⑧~⑩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⑩ 영제5조제3항제3호와 제5호내지제7호의 사항을 심의기준과 기타 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조의2 (신설)</p>	<p>⑩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3조의2(건축위원회 운영등) 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하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p> <p>②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개최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시 배포할 수 있다.</p> <p>③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p>
구 분	심 의 사 항
원안승인 (가결)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 사항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조건부승인	· 의안을 심의한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사항
재 심 의 (부결)	·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유 보	·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차기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신설)</p>	<p>④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아래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호의 단순한 규격또는 마감재료의 크기변경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건축물의 내부칸막이 변경 3. 동일한 외관디자인 형태로서 단순한 수직 수평중감(전체입면 면적의1/10이내) 4. 허가사항이 아닌 용도변경 5. 인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평이동 6. 대지면적 및 연면적 2/10이내의 변경 7. 기타 상기 각호와 유사한 내용의 변경 <p>⑤사전결정일로 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 (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미치는 영향</p> <p>6. 기타 관련도서 등</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내지 법 제34조, 법 제9조내지 법 제44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5조내지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게 아니하게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하여 적용한다.</p> <p>1. 기존건축물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 하는 범위</p> <p>가. 옥외계단, 옥탑, 계산탑등 건축물의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p> <p>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축</p> <p>다. 법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p> <p>2. (생략)</p> <p>②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80조외의 규정에 의거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5이상으로하되, 강화전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10분의7이상으로 한다</p>	<p>제4조의2(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 (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삭제)</p> <p>다.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후퇴한 건축선 부분은 분할하여 공도의 용도로 사용하여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③ 영제6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p> <p>.. 다음 각호의 1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후퇴한 건축선 부분은 분할하여 공도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건축물의 건축</p> <p>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p> <p>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3. 준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제5조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4. 상업지역안에서 층수가 7층이상이거나 연면적 4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단, 공장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이상</p> <p>6. 준공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7. 녹지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8. 기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p> <p>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p> <p>제6조 (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8조제7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직으로 구성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p> <p>1.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p> <p>2. 건축허가 및 복합민원담당</p>	<p>제6조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3. 착공신고, 중간검사·사용검사담당</p> <hr/> <p>4.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유지관리담당</p> <hr/> <p>5. 건축민원 및 건축물 검사·조사담당</p> <hr/>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hr/> <p>제7조 (생략)</p> <p>제8조 ①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1.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2.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3. (생략)</p> <p style="padding-left: 40px;">4.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5. 공장부지내의 일시적인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백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hr/> <p>③ (신설)</p> <hr/> <p>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p>	<p>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 ①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1.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2.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3.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4.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40px;">5. (삭제)</p> <hr/>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hr/> <p>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군수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p> <hr/>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방법·절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hr/> <p>(신 설)</p>	<p>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p> <p>1. 5층이하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전의 현장조사 및 감사</p> <p>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물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서 선정한 경우에는 제1호를 준용한다</p> <p>3.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업무대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대행시 건축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조사·검사 및 인을 한후 건축사법에 규정된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수수료의 천원</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 (건축지도원)</p>	<p>미만을 절사한다.)</p> <p>제9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p> <p>①제9조의 규정에 규정한 의한 업무대행을 한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로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제10조 (현행과 같음)</p>
<p>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p> <p>제11조 (대지안의 조경)</p> <p>① 법제32조 및 영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백제곱미터이상인 대지(자연녹지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3 (생략)</p> <p>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교습소, 공항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내지 제3호</p>	<p>제3장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등</p> <p>제11조 (대지안의 조경)</p> <p>① ----- -----대지에는----- ----- -----</p> <p>1~3 (현행과 같음)</p> <p>4.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이상 <u>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 안 및 주변의 수립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 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p> <p>2~5 (생략)</p> <p>6. (신설)</p> <p>③ (생략)</p> <p>1~3 (생략)</p> <p>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단, <u>도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에 한한다)</u></p> <p>2~5 (현행과 같음)</p> <p>6.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 <u>건축물</u></p> <p>③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 (식재동 조경기준)</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신설)</p> <hr/> <p>④ (신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옥상조경을 하고서 수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6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조경을 위한 식수동을 띠모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교목의 경우 100센치미터 이상, 관목의 경우 50센치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13조 (조경공사비 예탁등)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적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 (현행과 같음)</p>
<p>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①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품관련시설, 공동주택, 학교, 공장, 창고시설, 기타 군수</p>	<p>제14조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너비 12미터이상으로 도로에 2면이상 접하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신축하는 건축물</p> <p>2. 군수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p> <p>3.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 도시설계지구 내에 신축하는 건축물</p> <p>㉒ 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표 5와 같다.</p> <p>㉓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가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위원회에 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p> <p>㉔ 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5조 (생략)</p> <p>제16조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제4장 지역안에서의 건축물</p> <p>제17조 (생략)</p> <p>제18조 (생략)</p> <p>제19조 (생략)</p>	<p>제15조 (현행과 같음)</p> <p>제16조 (현행과 같음)</p> <p>제17조 (현행과 같음)</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제19조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 (생략)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21조 (생략)	제21조 (현행과 같음)
제22조 (생략)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 (생략)	제23조 (현행과 같음)
제24조 (생략)	제24조 (현행과 같음)
제25조 (생략)	제25조 (현행과 같음)
제26조 (생략)	제26조 (현행과 같음)
제27조 (생략)	제27조 (현행과 같음)
제28조 (생산농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제28조 (현행과 같음)
1~7 (생략)	1~7 (현행과 같음)
8. <u>참고시설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한다)</u>	8. <u>참고시설</u>
9~12 (생략)	9~12 (현행과 같음)
13.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 판매취 급소에 한한다)</u>	13. ----- (주유소 및 위 <u>험물 판매취급소에 한한다)</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제29조 (자연농지지역안에서의 -----)	제29조 (현행과 같음)
1~9 (생략)	1~9 (현행과 같음)
10. <u>참고시설</u>	10. (삭제)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13. <u>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안정에 관한 법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 판장에 한한다)</u>	13. ----- ----- <u>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공동판매시설.....)</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제30조 (생략)	제30조 (현행과 같음)
제31조 (생략)	제31조 (현행과 같음)
제32조 (생략)	제32조 (현행과 같음)
제33조 (생략)	제33조 (현행과 같음)
제34조 (생략)	제34조 (현행과 같음)
제35조 (생략)	제35조 (현행과 같음)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36조 (생략)	제36조 (현행과 같음)
제37조 (생략)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 (생략)	제38조 (현행과 같음)
제39조 (생략)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40조 (생략)	제40조 (현행과 같음)
제41조 (생략)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42조 (생략)	제42조 (현행과 같음)
제43조 (생략)	제43조 (현행과 같음)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44조 (생략)	제44조 (현행과 같음)
제45조 (생략)	제45조 (현행과 같음)
제46조 (생략)	제46조 (현행과 같음)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5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47조 (생략)	제47조 (현행과 같음)
제48조 (생략)	제48조 (현행과 같음)
제49조 (생략)	제49조 (현행과 같음)
제50조 (생략)	제50조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 (생략) 제6장 건폐율, 용적율등	제51조 (현행과 같음)
제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1~7(생략)	① 1~7(현행과 같음)
8. 전용공업지역 : <u>100분의 60</u>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9. 일반공업지역 : <u>100분의 60</u>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0. 준공업지역 : <u>100분의 60</u>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7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11. 보전녹지지역 : <u>100분의 20</u>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2. 생산녹지지역 : <u>100분의 20</u>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3. 자연녹지지역 : <u>100분의 20</u>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이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및 영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u>100분의 60</u>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생략)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1.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법률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u>토지개발공사</u>,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시행한 지역은 동계획에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5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① (생략)</p> <p>1. (생략)</p> <p>2. 일반주거지역 : 400 퍼센트</p> <p>3 ∞ 13 (생략)</p> <p>14. <u>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u> : 400퍼센트</p> <p>제55조 내지 제56조 (생략)</p> <p>제5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1~10 (생략)</p> <p>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p> <p>12. (생략)</p> <p>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p> <p>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또는 지구 및 영제8조제1호 각호의</p>	<p style="text-align: right;">----- ----- 한국토지 공사, ----- ----- -----</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54조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일반주거지역 : 400 퍼센트 (다만, 아파트의 경우 300퍼센트)</p> <p>3 ∞ 13 (현행과 같음)</p> <p>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300퍼센트 (다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200퍼센트)</p> <p>제55조 내지 제56조 (현행과 같음)</p> <p>제5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 1~10 (현행과 같음)</p> <p>11. 보전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p> <p>12. (현행과 같음)</p> <p>13.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p> <p>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1에 해당하는 구역 : 60제곱미터</p> <p>②~③(생략)</p> <p>제5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p> <p>①(생략)</p> <p>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도표 : 생략)</p> <p>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p> <p>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도표 :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제5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생략)</p>	<p>60제곱미터</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58조-----</p> <p>①(현행과 같음)</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p> <p>-----</p> <p>-----</p> <p style="text-align: right;">-----농어</p> <p>촌산업지구에서-----</p> <p>-----</p> <p>(도표 : 생략)</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p> <p>-----</p> <p style="text-align: right;">-----농어</p> <p>어촌산업지구에서-----</p> <p>-----</p> <p>(도표 :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제59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생략)</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지구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도표 : 생략)</p> <p>2. (생략) 3. (생략) 4. (생략)</p> <p>② 1~3 (생략)</p> <p>4. (신설)</p> <p>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건축물의 높이</p> <p>제60조 (생략) 제61조 (생략) 제62조 (생략)</p> <p>① (생략) ② (생략)</p> <p>1.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동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p> <p>2. (생략) 3. (생략)</p> <p>③ (생략)</p>	<p>1. ----- ----- ----- ----- ----- 농어촌산업지구 ----- -----</p> <p>(도표 :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p> <p>② 1~3 (현행과 같음)</p> <p>4. 도시계획사업시행 (20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 구간의 도로에 면한 대지상호간 합벽개발의 경우</p> <p>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건축물의 높이</p> <p>제60조 (현행과 같음) 제61조 (현행과 같음) 제62조 (현행과 같음)</p> <p>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1. 건축물 (다세대를 제외한다) 의 ----- ----- ----- ----- ----- 2배 (연립주택의 경우 3배) 이하 -----</p> <p>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도시설계등</p> <p>제65조 ①~② (생략)</p> <p>③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및 시공내용 하자 보수기간등을 명시한 <u>온돌시공확인서를</u>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신설)</p> <p>(신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도시설계등</p> <p>제65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온돌시공확인서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 시공확인서를</u> 교부-----</p> <p>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p> <p>제66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p> <p>④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p> <p>제67조 (조정위원회 위원) ①법 제76조의2 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p> <p>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68조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p> <p>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9조 (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p>
<신 설>	<p>제70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p>
<신 설>	<p>제71조 (비용분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부 칙 -</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